

송도국제도시 디엠시티(B1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www.APT2you.com)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만 방문접수(건본주택)도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시 자격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사업 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안내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1번지(B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지상35~48층 4개동 총 578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B1BL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총18세대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모집공고참조 2019년 10월 02일(수) 예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괄호()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

송도국제도시 디엠시티(B1BL)				
주택형		84A	84B	
총세대수		94세대	94세대	
기관별 세대수 배정 (10%)	장애인	인천광역시	1 (1)	1 (1)
		서울특별시	1 (1)	1 (1)
		경기도	1 (1)	1 (1)
	국가유공자 등		2 (1)	2 (1)
	장기복무 제대 군인		1 (1)	1 (1)
	10년 이상 복무 군인		1 (1)	1 (1)
	중소기업근로자		1 (1)	1 (1)
	북한이탈주민		1 (1)	1 (1)

2 공급일정 안내 [예정]

구 분	일 정(예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19년 10월 02일(수)	* 일간신문 및 분양 홈페이지(themcity-songdo.co.kr)
건본주택 오픈	2019년 10월 04일(금)	* 당사 건본주택(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4-7)
특별공급 접수	2019년 10월 07일(월)	* 인터넷 신청(www.ap2you.com) (08:00~17:30) * 건본주택 신청 시(10:00~14:0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 ※ 자격입증 서류 지참 또는 공인인증서 필수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19년 10월 16일(수)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개별조회
계약 체결	2019년 10월 29일(화)~ 2019년 10월 31일(목)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 시간 : 10:00~16:00

- ※ 2018.05.04.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PT2you) 특별공급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인하여,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위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당사 건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단,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인천보훈지청)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인천보훈지청) 중소기업 근로자(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북한이탈주민(통일부 하나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청약통장 가입 요건(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구 분	인천광역시(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인 2019년 10월 08일(화)입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수행합니다.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제3항에 의거 해당 지역인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 각호에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함.)
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4

유의사항 안내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
- 당첨자발표일이 일반공급 당첨자발표일과 동일하게 변경됨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동일주택 내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경제자유구역,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등)에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 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경우 소명 등 일반공급 처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적격여부를 판정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